
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연월일 : 2009. 12. 16

제안자 : 민경환 의원외

□ 수정 이유

- 개정되는 조례안 중 조문 명확성과 원활한 시행을 하기 위함.

□ 수정 주요내용

- 안 제4조제1항 제4호중 “차입금”을 “차입금 및 융자상환금”으로 한다.
- 안 제6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10. 벤처기업 등 기술력 우수기업
- 안 제13조제4항제5호중 “청주상공회의소 사무국장”을
“상공회의소 사무국장”으로 한다.
- 안 제15조제2항 중 “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”를
“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”로 한다.

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- 안 제4조제1항 제4호중 “차입금”을 “차입금 및 융자상환금”으로 한다.
- 안 제6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10. 벤처기업 등 기술력 우수기업
- 안 제13조제4항제5호중 “청주상공회의소 사무국장”을 “상공회의소 사무국장”으로 한다.
- 안 제15조제2항 중 “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”를 “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”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4조(기금의 조성) ① (생 략) 1. ~ 2. (생 략) 3. <u>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의 예수금 및 출연금</u> 4. 기타 출연금, 보조금, 차입금 및 용자상환금	제4조(기금의 조성) ① (현행과 같음) 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3조----- ----- <u>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출연금 및 용자금</u> 4. -----, 차입금	제4조(기금의 조성) ① (개정안과 같음) 1. ~ 2. (개정안과 같음) 3. (개정안과 같음) 4. ----- ---, <u>차입금 및 용자상환금</u>
제6조(기금의 지원대상자) ①(생 략) 1. ~ 9. (생 략)	제6조(기금의 지원대상자) ①(현행과 같음) 1. ~ 9. (현행과 같음) (신 설)	제6조(기금의 지원대상자) ①(개정안과 같음) 1. ~ 9. (개정안과 같음) 10. <u>벤처기업 등 기술력 우수기업</u>
제13조(용자심의위원회)의 설치 및 운영) ① ~ ③(생 략) ④(생 략)	제13조(용자심의위원회)의 설치 및 운영) ① ~ ③(현행과 같음) ④(현행과 같음)	제13조(용자심의위원회)의 설치 및 운영) ① ~ ③(개정안과 같음) ④(개정안과 같음)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1. ~ 2.(생략)</p> <p>3. <u>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회장</u></p> <p>4. <u>도의회산업경제위원회 위원 1인</u></p> <p>5. <u>상공회의소 사무국장</u></p> <p>제15조(사후관리) ①(생략)</p> <p>②도지사 또는 기금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은 허위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자금을 사업목적외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금의 환수 등 <u>필요한 조치</u>를 할 수 있다.</p>	<p>1. ~ 2.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장</u></p> <p>4. <u>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1명</u></p> <p>5. <u>청주상공회의소사무국장</u></p>	<p>1. ~ 2.(개정안과 같음)</p> <p>3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4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5. <u>상공회의소 사무국장</u></p> <p>제15조(사후관리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----- <u>필요한 조치</u>를 하여야 한다.</p>